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12호

2026년도 제1회 안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예정인원

지원코드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운전	한시임기제 9호	1명	채용일 ~ 2027. 3. 15. (주 35시간)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2 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	한시임기제 9호	ㅇ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업무 ㅇ 호송 및 단속차량 운전업무 ㅇ 당직 및 그 밖에 기관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하는 사람 ☞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자격정지 등 관련 법률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4. 7.)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 군 운전면허 아닌, 경찰청에서 발급된 면허증만 가능)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 자(예정인 자 포함)는 응시 불가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전체 경력'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 3. 26.) 기준]

○ 관련 분야 근무경력

채용분야	우대요건
운전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분 야	인정자격증
직무 관련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통신·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 2012.1.1. 이전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2, 3급 불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 근무경력 관련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승합자동차 인정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름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서 **기관장 및 주요임원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및 그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제외
- 승용차, 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을 제외한 **대형버스 운전경력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①근무기간(연·월·일), ②업체명, ③직위(직급), ④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담당업무, ⑦발급자 연락처 등 모두 기재**(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상 운전직렬 명시만으로 경력인정이 불가하므로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위 ①~⑦ 기재가 어려운 경우, **[별지서식 11]**로 제출 또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등으로 보완하는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

○ 군경력의 경우 군 면허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만 인정[대형 승합차만 인정, 화물차·특수차 등 제외]

- **군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제출 시 근무경력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서류심사 시 인정여부 결정)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최대 5년)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기관 폐업으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와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우대요건 : 자격증 관련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관련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①운전면허 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0점 처리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서류전형)**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 이상 10배수(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를 선발하며, 10배수(10명)를 초과한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를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서류전형 심사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담당 예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실성 등 평가
우대사항 (우대 요건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교통법규 준수이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아래의 평가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6. 3. 16.(월) ~ 3. 26.(목)	3. 24.(화) ~ 3. 26.(목)	'26. 4. 2.(목)	'26. 4. 7.(화)	'26. 4. 17.(금) 예정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3 . 24.(화) ~ 3. 26.(목)**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대리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서류 봉투 겉면에 **"한시임기제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후 응시표를 회송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응시자에게 접수 결과 및 응시번호 문자 통지)

○ **접수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5층 운영지원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사리수산빌딩 5층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5층 (우 15458)

○ **문의전화**: ☎ 031-364-5703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1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7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ㅇ 별지서식 8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 별지서식 11 참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채용예정일 : 2026년 4월 초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채용일 ~ 2027. 3. 15.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지급

○ 보험사항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본인 희망 시 가입)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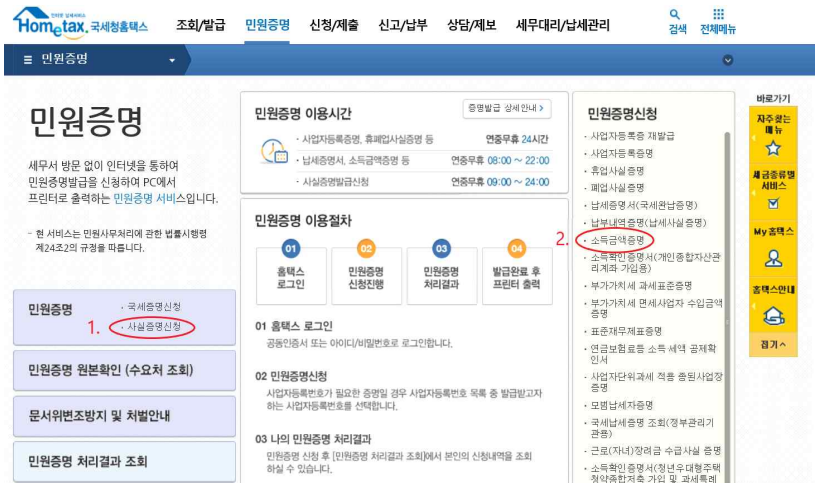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031-364-57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	한시임기제 9호	1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주요 업무		○ 관용차량 운행 및 수행 ○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 일반행정 업무지원 ○ 그 밖에 기관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인 자(예정인 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요건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연차별 차등 배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관련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근무 경력 ※ 대형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한함 ☞ 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최근 10년 이내 경력 인정, **1년 미만 불인정**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공고일 이전 발급 또는 전체경력조회 아닌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고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뺑소니,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은 횟수와 관계없이 최저점(0점) 처리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배점)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012.1.1. 이전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3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감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 : 필수서류	ㅇ 지원동기, 성장과정, 근무경력, 미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 : 필수서류	ㅇ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을 토대로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5)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7)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8.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 (별지서식 8)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9)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10)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11.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필수서류	ㅇ 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사이 발급된 것만 인정하고, **공고일 이전 발급 또는 전체경력 조회가 아닌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고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 "법규위반 조회기간", "교통사고 조회기간" 모두 반드시 **"전체경력"으로 조회**
12.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ㅇ 면접 시 원본 지참
13.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1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개별서류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대형운전면허자격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ㅇ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종(제조사, 차량모델 포함), 승차인원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ㅇ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종(제조사, 차량모델명 포함), 승차인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 ※폐업회사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등 증빙자료 제출 ㅇ 경력검증을 위해 **4대 보험 이력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중 1종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15.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개별서류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ㅇ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ㅇ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ㅇ 외국어(영문제외)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16.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 개별서류	

✓ 제출서류는 위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또는 집게 사용, **스테플러 사용금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서명)'란이 있는 별지서식 서류에는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 예정**

✓ 위 서류(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람

(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응시원서 표지용>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작성목록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 표시, 목록의 맨 앞장에 철하고 아래의 순서대로 차례로 편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의 작성자 성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목 록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제출	□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2)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서식 4)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5)	□ 제출	□ 미제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6)	□ 제출	□ 미제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7)	□ 제출	□ 미제출
8.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별지서식 8)	□ 제출	□ 미제출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9)	□ 제출	□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10)	□ 제출	□ 미제출
11. 운전경력증명서(원본) 1부	□ 제출	□ 미제출
12.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 제출	□ 미제출
13.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	□ 제출	□ 미제출
14. 경력증빙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미제출시 경력불인정)** - 폐업회사는「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등 제출	□ 제출	□ 미제출
15.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 미제출
16. 정부수입인지 면제 관련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1>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본인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후면 편철)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응시자격		□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예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③ 응시자격 : '□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로 기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하고,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⑦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별지서식 2>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9호(운전)	성명	

2. 필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면허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제1종 대형 운전면허	2015.7.2		

3. 우대요건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차량종류 승차정원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 (○○과)	20.1.1 ~ 24.12.5 (주40시간)	승합 대형 현대 유니버스 45인승	고속버스운행	전임/ 비전임

	제외기간 (휴직, 직위해제 기간 등)	휴직 등 기간	사유
경력		22.9.5. ~ 23.9.4.(1년)	휴직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여부	분류	건수
경력		교통사고(최근 10년)	0건
		교통법규 위반(최근 10년)	0건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근무일자, 퇴직일자는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 상세기재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응시번호는 미기재)

2. **성명・1종 대형면허 관련사항**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필요에 따라 행을 늘려 작성 가능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가능)

4. 우대요건 중 경력사항

   -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 형태 등)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근무 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한달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내 경력을 기재

5. 우대요건 중 직무 관련 자격증 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 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6.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7.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시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 3>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성장과정, 가족사항, 성격,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경력(업적, 상훈 포함), 생활신조와 가치관, 대인관계, 취미활동, 특기사항, 미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쪽번호 부여 후,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4>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운전)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직무수행계획서는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을 토대로 아래 문항에 대해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쪽번호 부여 후,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1. 자신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업무수행 의지, 응시 취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2. 직무 수행 방향 또는 비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3.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이끌어낸 경험 또는 예정 직무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2026.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5>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공무원 채용 관리	결격사유·범죄유무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6>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조회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7>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별지서식 8>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 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9>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전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10>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주민등록번호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11>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폐업 등의 문제로 출력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운행차종 ②	승차정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③	비고 ④
	부터	까지							
						승합차 대형 현대 유니버스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발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운행차종 : 승합차 종류(대형), 제조사, 차량모델명 기입
③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기재(예시 주 40시간)
④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서식 1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험종류	2026년 제1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의사 철회 /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e-mail)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철회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1. 응시수수료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4.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반환받을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본 신청서(【별지서식13】)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Fax 혹은 e-mail을 이용해 함께 제출하고, 응시의사 철회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응시수수료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별지서식 13>

※ 응시서류 반환 청구 시 작성
(필수 제출서류 아님, 채용절차 종료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요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